

2018

Vol.18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코스카리포트

KOSCA + NEWSLETTER



CONTENTS

KOSCA LETTER Vol. 18

코스카레터 제 18 호



2018년 Vol. 18

발행인 회장 김세원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12



36

PART 1

- 04 1. 권두사
- 박재호 국회의원
 - 임경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PART 2

- 06 2. 협회 소식
- 14 SPECIAL. 01 >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북
- 16 3.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2 SPECIAL. 02 >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23 SPECIAL. 03 > 건강 저킴이

PART 3

- 24 4. 전문건설인의 삶
- 건설인 제33호 강호건설(주) 대표이사 강성호
 - 건설인 제34호 (주)연동 대표이사 반백철
- 28 SPECIAL. 04 > 쉬어가는 유머
- 29 SPECIAL. 05 > 이달의 경영어록
- 30 5. 건설산업정보 - Part.1
- 36 SPECIAL. 06 > 부산의 명소(금정산 범어사)
- 38 6. 건설산업정보 - Part.2
- 52 SPECIAL. 07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내용 및 문답풀이
- 54 7.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56 SPECIAL. 08 >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쿤스트하우스)
- 57 SPECIAL. 09 > 그것이 알고 싶다(하도급 분쟁 해법)
- 58 8. 회원사 질의·응답
- 60 SPECIAL. 10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시행

PART 4

- 62 9. 회원사 현황
- 64 SPECIAL. 11 > 생활 속 유용한 꿀팁
- 65 SPECIAL. 12 > (주)YTN 복지혜택물 안내
- 66 10.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68 SPECIAL. 13 > 2018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 69 SPECIAL. 14 > 중앙회·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 시회 4/4분기 주요일정 안내
- 70 11. 회원사 참여 마당

01

권두사 MESSAGE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박재호
국회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먼저 코스카레터 18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우리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세원 회장님을 비롯해 협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원사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신속히 공유하는 등 협회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전국 협회의 모범이 되고 있음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원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문건설인들의 뜨거운 헌신과 열정이 대한민국과 우리 부산의 발전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들의 소명은 남아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와 더불어 특히 우리 부산은 민선 7기에 들어서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부산 정권의 교체를 이뤘습니다. 부산의 가치, 부산의 사람, 부산의 행정,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정과 투명’의 가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부산을 디자인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경륜과 능력이 더해지고,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부산의 행정이 더해진다면 부산의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18호 동안 계속 발간되어 온 코스카레터가 그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는 내년 생활 SOC에 1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SOC는 경기부양과 지역 균형발전,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역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SOC 투자는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생활 SOC의 대부분이 전문건설업체들이 영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SOC 예산 대폭 감축으로 그동안 불황에 시달려 온 전문건설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문건설인들은 생활 SOC 예산 투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시공기술 특화와 체육시설 등 관련 사업 실적 확보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원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부산을 다시 세우는 데 힘을 합칩시다. 저 박재호도 부산의 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임경모입니다.

코스카레터 18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부산 지역 경제의 한 축인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세원 회장님을 비롯한 전문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외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내적으로는 정부 SOC 사업 예산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요인으로 건설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인 여러분에게도 난관을 던지고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부산시 경제는 그간 건설산업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전문건설업은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못해 지역 내 대형 민간 건설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성장은커녕 갈수록 생존조차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고자 우리 시에서도 지역 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형공사 발주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을 적용토록 하여 지역 업체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업체에서는 신기술과 공법을 개발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여 하도급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익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지역업체와 계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련부서들이 협업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공동도급, 협력업체 등록현황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지속적으로 하여 건설대기업과 지역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안전은 모든 것에 앞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민선 7기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시민명령 1호로 받들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인 여러분께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어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졌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시민의 안전을 내 가족처럼, 누구보다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족이 행복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우리 부산이 진일보하기를 기대합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임 경 모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협회 소식

❖ 제회의 및 행사

2018회계연도 제1차 운영분과위원회의

부산시회는 7월 5일(11:00 / 서면 골든뷰 뷔페) 「2018회계연도 제1차 운영분과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업종 대표회원이 결원된 실내건축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총 5개 업종에 대한 대표회원을 보궐선출하고, 업종별로 당면한 현안사항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업종별 대표회원 보궐선출 현황

업종	보궐선출된 자	
	상호	성명
실내건축	(주)이플랜	유진철
	(주)일진아이앤씨	강병식
금속구조물·창호	(주)국일안전	최화자
비계·구조물해체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상대
상·하수도설비	(주)금신건설	문정찬
	(주)오제건설	김영동
조경식재	(주)공간조경	정석봉



2018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및 제1차 임원연석회의

부산시회는 7월 12일(10:30 / 허심청 어가) 「2018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및 제1차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운영위원 및 감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원된 제11대 운영위원 보궐선거의 건과 부회장 선출의 건을 의결(선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함)했다.

또한 임원연석회의에서는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건설의 날 포상자((주)주일건설 대표이사 박강일, 태영건설(주) 대표이사 박판용)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2018년 상반기 협회 주요업무 보고 및 협회 위상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추진 계획 등 협회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 제 11대 부회장 및 운영위원(보궐) 선출 현황

구분	선출(보궐)된 자	
	상호	성명
부회장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운영위원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상대
	(주)공간조경	정석봉



제26회 부산·광주시회 대표회원 합동연수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와 광주시회(회장 이서길)는 지난 9월 12일(수)부터 13일(목)까지 양일간 부산 해운대 그린나래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양 시회 대표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주시회 대표회원 합동 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합동연수회는 지난 1993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광주 양 시회가 친선교류 결연을 맺은 이후 올해로 26년째를 맞는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광주시회 이서길 회장님을 비롯한 양 시회 회원님을 모시고 합동연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부산·광주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서 양 시회의 친선교류의 장을 열어주시고 화합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상호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회 이서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부산 시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합동연수회를 통해 양 시회 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양 시회 회원사 모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연수회에서는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와 송도 해상케이블카(크리스탈루즈) 및 암남공원, 스카이워크 등을 함께 탐방하며,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8년 제3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부산시회는 9월 20일(07:00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회원사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3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세미나에는 박재호 국회의원을 초빙하여 “부산, 중심이 건강한 도시로!”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강연이 끝난 후 부산시회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박재호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글’과 ‘캐리커처’를 전달했다.



❖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2018년 상반기 대형공사장 현장방문조사 실시

부산시회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부산시 하도급관리팀 및 부산시가 위촉한 공정하도급 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지역 내 13개 대형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부산시회는 공종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하고 “각 현장의 하도급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당부뿐만 아니라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참석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8월 16일(14:00 /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애로사항을 알리고 개선을 요청했다.

부산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광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기장군과 같이 접근성이 용이한데도 관내 업체에게 도급주기 위해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을 군 소재업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위장전입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규제에 해당된다”며 “참가자격 제한은 시 내에 있는 군 중에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돼 있는 경우 자치구를 제외한 군 소재 업체만으로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최병환 차장은 “오늘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지방조달청장 간담회

부산시회는 8월 28일(14:00 / 협회 회장실) 「부산지방조달청 류재일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불필요한 업역 분쟁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류재일 청장은 “계약방법 및 발주업종 선정 등 계약관련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있으나,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을 본청에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간담회

부산시회는 9월 6일 「임경모 부산시 건설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시 건설본부 임경모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시 건설본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등 제도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타 발주기관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감사인사를 전한 데 이어 “건전한 건설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설계변경 미반영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임경모 본부장은 “부산시 시책을 준수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과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회,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 및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간담회

부산시회는 9월 19일(15:00 /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부산시회 회장단,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 및 건설관계관과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중소전문건설업 Scale Up 참여업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회, 부산광역시 시장 및 건설대기업 영남지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우수한 시공기술력을 보유한 부산전문건설업체가 건설대기업이 시공 중인 부산지역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하며,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확대는 부산시민의 분양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건설근로자 고용 창출, 지역 자재·장비 업체의 동반 성장이라는 유기적인 낙수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구·군청에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부산시 하도급관리팀이 부산시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부산시에 건의했다.



고려개발(주) 김홍선 영남지사장은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실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산종합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에 따른 최대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만큼 대폭 상향되어야 지역경제의 낙수효과가 발생된다”며 현행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들에게 “부산 시민으로부터 얻은 분양 수익을 모두 수도권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역에 일감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하도급에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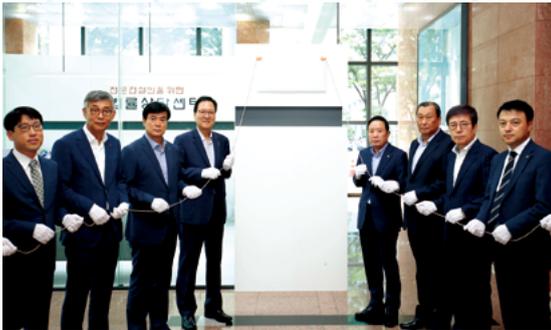
❖ 회장동정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개소식 참석

김영윤 중앙회장, 김세원 부산시회장(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회장단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8월 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법률 등 상담서비스 지원에 들어갔다.

법률상담센터는 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건설 관련 분야에서 △법률 △노무 △세무·회계 △기술 분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인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센터는 불공정 하도급 계약,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문제 외에도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지원하며, 노무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근재,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 세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목 및 건축 관련 기술 분쟁도 지원한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참석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8월 27일 (07:30 /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개선 등을 건의했다.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참석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9월 5일(14:00 / 포스코 P&S 타워) 열린 건설산업의 종합 전문 업역규제 개선과 34개 업종 개편의 방향을 정하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하여, 이번 생산체계 개편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도 건설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건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회원사의 뜻을 전달했다.

❖ 회원소식

2018년 제2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사회는 7월 10일 부산 금정산 능선길에서 「2018년 제2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을 실시했다.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 회원사 대표 38명이 참석했으며, 김세원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금정산 상마마을에서 시작해 만성암, 용낙암을 거쳐 능선을 따라 금정산성 동문까지 함께 걸으며 우의를 다지고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 베스트셀러 순위는 '반디앤루니스'의 10월 첫째 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글 송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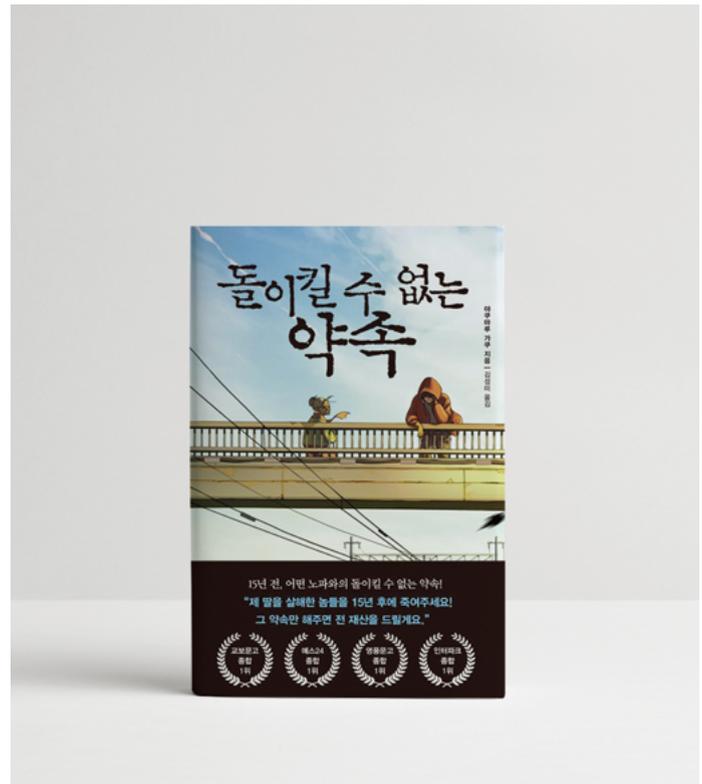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 혼 | 13,800원

가벼운 감기가 몸을 아프게 하듯, 가벼운 우울도 우리의 정신을 아프게 한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당신의 우울을 못 본 척해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가진 저자와 정신과 전문의와의 12주간의 대화를 엮은 책이다. 이 한 권의 책이 당신의 슬픔을 모두 가져가 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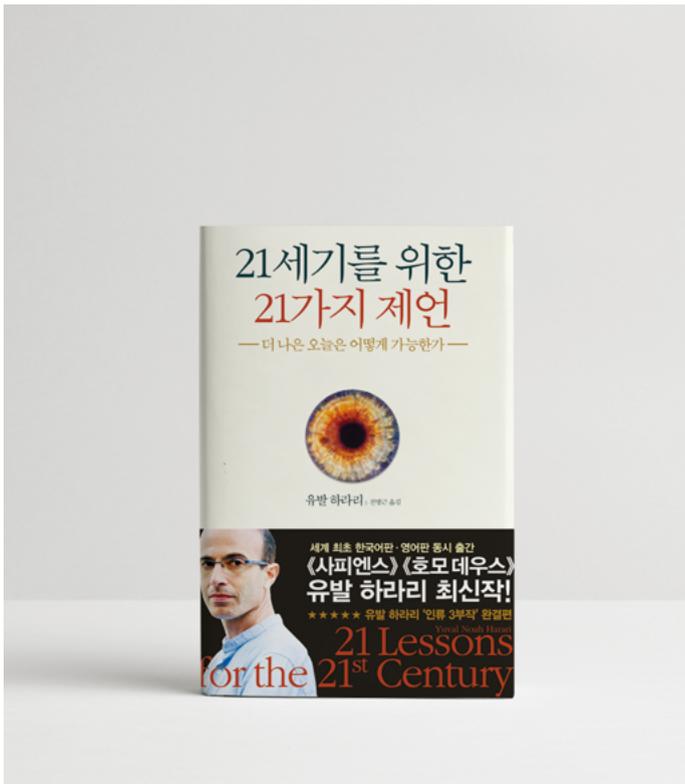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야쿠마루 가쿠 | 북플라자 | 15,000원

자신이 일하던 가게 손님의 제안으로 바를 겸하는 레스토랑의 공동경영자가 된 무카이! 그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에서 도착한 편지가 예전에 봉인한 기억을 되살린다. 「그들은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편지에는 그 한 줄만 적혀 있었다. 한 번 죄를 저지른 사람은 새 삶을 꿈꿀 수 없는 것일까?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은 응징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BESTSELLER BOOK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 하라리 | 김영사 | 22,000원

BEST
3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은 환멸, 일, 자유, 평등, 테러리즘, 교육 등 21가지 테마로 나누어 불확실한 세계에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 1부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개관하고, 2부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을 폭넓게 살펴본다. 3부에서는 테러리즘의 위협과 전 지구적 전쟁의 위험, 4부에서는 탈진실 개념을 살펴보고 5부에서는 이 혼돈의 시대에 처한 우리의 삶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인생 우화

류시화 | 연금술사 | 16,000원

BEST
4

이 책은 17세기 동유럽에서 구전되어 내려온 이야기를 재창작한 우화들과, 작가가 창작한 우화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들며 독자를 상상의 이야기 속으로 안내한다. 독특한 주인공들이 우리 대신 말하고,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우리는 웃고 즐기지만, 책을 덮고 나면 무엇인가 당혹스럽다. 그들을 통해 어김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작가의 노련함이 엿보인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수주지원

❖ 구포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부산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7월 5일 구포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주)반도건설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추진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부산지역에서 대형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중앙군 종합건설업체들이 도급받아 자사의 연고지 전문건설업체(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함에 따라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수주물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부산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및 건설근로자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구포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한편,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70%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함과 동시에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여 부산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에 따라 최대 5%의 추가 용적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등 협회와 함께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부산관내 새마을금고 개보수 공사에 부산전문건설업체 참여 추진

부산시회는 8월 1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부산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부산전문건설업체가 도급·시공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공고 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산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산하 새마을금고에 지침을 시달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부산지역에서 발주되고 있는 대부분의 새마을금고 개·보수공사에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전문건설업체가 부산지역에 영업소만 있을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외면 당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 민의 자금이 부산지역 새마을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타 지역 전문건설업체에게 건설공사를 도급 주는 것은 부산 자금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비전 및 기본이념인 지역공동체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므로 부산전문건설업체가 부산관내 새마을금고 개·보수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편향발주 및 전문공사 통합발주 지양 추진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참여기회 제공을...”

부산시회는 9월 3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에 전문공사 발주 시 구분된 전문공사를 통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을 지양하는 등 시설물유지관리업 편향 발주를 지양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준수하여 학교 화장실 개·보수공사 및 급식실 개·보수공사, 교실 개·보수공사 등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발주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공종 간의 연계성이 전혀 없는 공사임에도 여러 개의 공사를 통합 발주하면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다는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발주하고 있는 것을 지양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 것이다.

❖ 오리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8월 6일 오리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인 (주)이노팩스(대표: 박승관, 051-817-5133)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추진했다.

수년간 지속되는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 속에 타 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이 부산지역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자사의 연고지 전문건설업체(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함에 따라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수주물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사를 대상으로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산시회도 대형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신축공사 등에도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부산시회는 오리일반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공장신축 등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70% 이상 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실내 리모델링 공사 발주 시 업역준수

부산지역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 419개 기관에 협조

부산시회는 9월 4일 부산지역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에 의한 전문건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는 일률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산시회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발주되는 실내 개·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사는 보수·보강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다.

❖ 2018년 하반기 발주예정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추진

부산시회는 9월 11일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교육청 등 150여 부산지역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발주예정 공공공사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의 이번 건의는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재개발·재건축사업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홍보 건의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극 활용을...

부산시회는 9월 6일 부산광역시(도시정비과)에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구·군청 건축과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는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센티브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이 많은 실정으로 동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부산전문건설업체가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의 하도급공사에 보다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또한 부산시회는 구·군청 건축과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명단을 수집해 동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을 상대로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해당 전문건설업 발주 추진

실내 개·보수공사(리모델링),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구거암거 보수공사 등에 해당 전문건설업도 입찰참여 기회를...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리모델링),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구거·암거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내진보강 및 재해예방공사 등 발주 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거나, 특허·신기술 반영, 기존의 발주관행 등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9월 1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등 일부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동 공사의 입찰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뿐만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해당 전문건설업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최초 시공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 종료 이후라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몰아주기식 발주를 하고, 공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종 이상 전문공사의 복합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공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특허·신기술은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의 방법으로써 건설업의 업무영역이 될 수 없으며,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라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규제라고 밝혔다.

부산시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부산지역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동 공사의 입찰에 시설물유지관리업뿐만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해당 전문건설업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하고 있으며, 이번 협조를 통해 해당 전문건설업종의 입찰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을 인센티브 적용 요청”

부산시회는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9월 17일(월)부터 18일(화)까지 양일간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무실과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건의하고 건설현장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은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시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을 인센티브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향상 도모를 위한 것으로서 문현1구역, 대연8구역, 반여3구역 조합을 방문하였으며, 부산지역 대형 건설현장 2군데도 별도 방문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보증서 교부 현황 등의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부산시회는 앞으로도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확대를 위해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조합을 방문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도입 추진 철회 탄원서 제출

부산시회는 7월 16일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선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도입을 철회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중앙회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경쟁입찰 시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이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91호, 2018. 5. 30.)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공공공사 발주 물량 축소 및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고용 확대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기의 제도는 고용여력이 많은 대형건설업체만을 위한 제도로 운용되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부산시회 회원사의 탄원서 271부를 취합하여 제출한 것이다.

❖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사례 개선 추진

부산시회는 7월 16일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조사하고 이의 개선을 중앙회를 통해 정부기관에 건의했다.

부산시회에서 파악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사례로는 단가계약공사(1개월 이상)에 건강·연금보험료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발주기관에서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공사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토록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아 전문건설업체에서 경영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건설업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부산시회는 7월 27일 건설업관리규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이후에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건설업관리규정을 현행 유지하여 줄 것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추후 최종판결 결과가 무혐의로 확정시 건설업자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특히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로 행정처분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은 향후 이루어질 항소 등 재판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설업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처분 가능토록 현행 유지를 건의한 것이다.

❖ 지역건설산업 발전과제 부산광역시에 제출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 홍보 및 정보 제공

부산시회는 8월 21일 지역건설산업 발전과제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 홍보와 함께 조합명단의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부산시회에서 제출한 발전과제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참여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조합 명단을 부산시회에 통보하여 줄 것과 하도급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 소규모 복합공사 대상범위의 확대(현행: 4억원 미만 → 개선: 10억원 미만)에 대한 과제를 제출한 것이다. 부산시회에서 제출한 발전과제는 향후 실무자 회의와 올해 11월경 개최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상정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 하도급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부산시회는 8월 17일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적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부산시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30% 전문건설업체는 아직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과도하게 하자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하여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 그리고 추가 수수료를 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신설 반대

부산시회는 9월 6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최근 건설업체들은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으로 행정업무가 증가되고 있어 영세한 중·소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의 실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서는 하자 없는 완벽시공으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해야 하나 이러한 행정업무 증가로 보증서 발급업무, 4대 사회보험 가입업무 등에 더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게 되므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신설 반대를 건의한 것이다.

❖ 경기도 조례(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정 반대 추진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상위법 위반한 것

부산시회는 경기도가 최근 추진 중인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도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지난 8월 13일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조례 개정은 100억 미만 공공공사 예정 가격 산정 시 현행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건설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부산시회에서는 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 500여 부를 중앙회에 제출하고 경기도 조례 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예규 개정 없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상위법령 위반이고, 중앙정부 감사나 소송 등을 감수하고 실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Feeling Mov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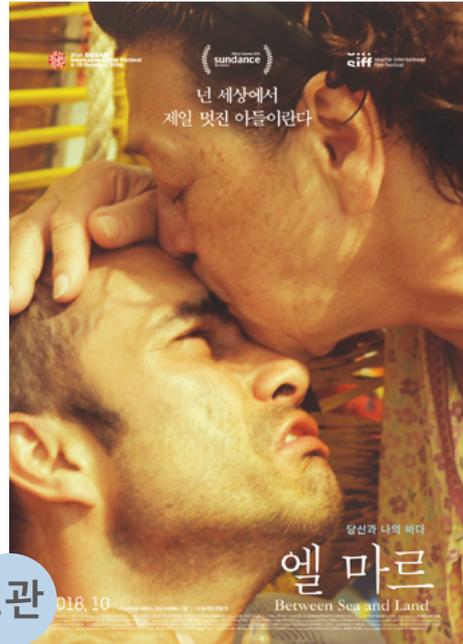
1관

창궐

개봉 | 2018.10.25.
 감독 | 김성훈
 출연 | 현빈, 장동건, 조우진

오늘 밤, 세상에 없던 혈투가 시작된다

밤에만 활동하는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야귀(夜鬼)'가 창궐한 세상, 위기의 조선으로 돌아온 왕자 '이창'(현빈)은 조선 땅을 밟자마자 산 사람을 물어뜯어 흡혈하는 야귀떼를 목격하게 된다. 이어 최고의 무관 '박종사관'(조우진) 일행을 만나 제물포에 창궐한 야귀에 대해 알게 되고, 야귀떼를 소탕하는 그들과 의도치 않게 함께하게 된다. 이후 '이창'은 궁으로 가 야귀떼를 물리칠 군사를 요청하지만 미치광이 왕 '이조'(김의성)는 야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때마침 나라의 혼란을 이용해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절대악 '김자준'(장동건)은 개벽을 꿈꾸며, 자신의 계략에 방해가 되는 '이창'을 해하려는 모습으로 숨 막히는 긴장감을 유발한다. 세상의 운명을 거머쥔 '이창'과 '김자준' 두 사람의 대립을 기대하게 만든다.



2관

엘 마르

개봉 | 2018.10.25.
 감독 | 마놀로 크루즈, 카를로스 델 카스티요
 출연 | 마놀로 크루즈, 비키 헤르난데즈, 비비아나 세르나

“바다는 우리에게 베폰 만큼 가져가.”

스물여덟 살 청년 '알베르토'(마놀로 크루즈)는 해안가에 인접한 늪지대에서 어머니 '로사'(비키 헤르난데즈)와 단둘이 살아간다. 어린 시절 근육 이상을 판정받은 알베르토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지만 밝은 성격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로사는 그런 이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핀다. 하지만 둘만의 삶을 이어가기에 현실은 버겁기만 하고 밝디 밝은 알베르토의 마음에도 우울이 젖어든다. 신체장애를 가진 아들과 헌신적인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다지 새로운 소재가 아니다. <엘 마르>는 어쩌면 익숙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공법으로 풀어가는 영화다. 여기에 시시각각 그 모습을 바꾸는 카리브 연안 늪지대와 바다의 풍광은 감정의 흐름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영화 속 또 다른 캐릭터로서 감동을 더해준다.

깊어가는 가을, 괜스레 우울해진다면 '가을 우울증'을 의심하자

글 송정은

선선한 바람과 짧아진 해가 가을을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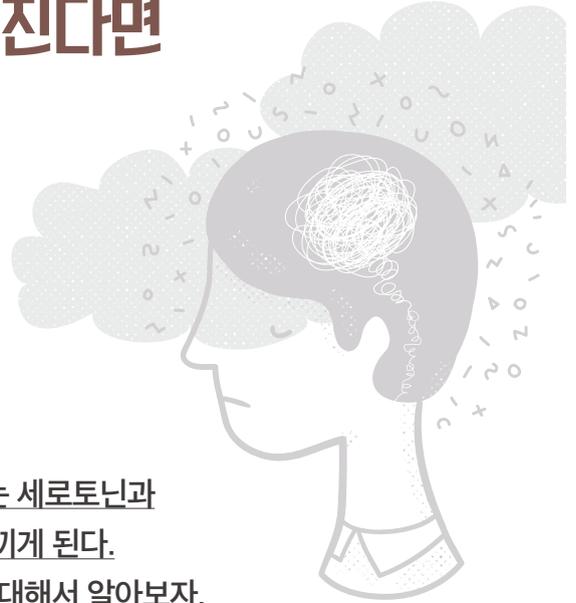
날씨가 스산해지는 가을이면

유달리 우울하고 쓸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감정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조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가을에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감소하게 되어 쉽게 우울증을 느끼게 된다.

가을에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 가을 우울증과 극복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울하고 무기력한 느낌, 우울증일까?

우울증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다. 이런 질환을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별도로 분류할 정도다. 계절성 우울증 중에서도 특히 가을에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

이 많은데 가을 우울증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가을부터 시작되는 일조량 감소와 기온 저하를 유력한 원인으로 꼽는다. 갑작스러운 일조량의 변화는 체내 멜라토닌 조절의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주기 조절과 생체리듬 조절 등의 기능을 맡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서 수면장애나 진정작용을 유발해 우울한 기분을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누구나 우울을 경험한다.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삶에서의 어떤 사건들, 갈등 때문에 또는 특별한 외적인 이유 없이도 슬퍼지거나 우울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가을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증상이 조금 다르다. 가을 우울증의 특징적 증상은 기분이 저하돼 우울감을 느끼며 피곤감, 집중력 저하, 긴장, 초조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한다는 점이다. 불면까지는 아니지만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을 종일 느낀다. 자신도 모르게 "가을을 타는 것 같다"고 말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해졌다면 '가을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

우울증 예방에는 따스한 햇볕이 해답

가을 우울증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바로 햇볕이다. 햇볕을 많이 쬐면 인체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일조량이 가장 많을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벼운 산책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분비로 우울감을 떨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엔도르핀 증가로 스트레스도 관리할 수 있다.

음식을 통해서도 가을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블루베리나 엔도르핀 분비를 돕는 치즈 등의 유제품은 계절성 우울증의 발생을 막아주는 음식이다. 오메가3성분이 많이 함유된 호두, 고등어, 연어도 우울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가을 우울증은 보통 시간이 지나 봄이 되면서 저절로 나아진다. 하지만 우울증 증상이 심하고, 최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매년 가을에 같은 증세가 반복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방치해선 안 된다. '봄이 되면 절로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증상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심리적 피로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가급적 의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

04

건설인 제33호

+ 전문건설인의 삶을 누려오면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강호건설(주)

대표이사

강 성 호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로 '인간 승리'를 이뤄온 불굴의 건설인

“성공은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The best is yet to come)'란 말이 있다. 여기 '나의 성공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주먹을 불끈 쥔 건설인이 있다. 범창종합건설(주)와 강호건설(주)를 거느린 강성호(61) 회장. 영도에서 30년 이상 뼈가 굵은 중견 토목사업가다. 부드러운 표정이지만 자신감이 넘친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의 일관된 면모가 읽힌다.

창원 출신의 그는 꽤 어렵게 자랐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했으니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고교를 졸업한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하지만 강성호 사전에 '포기'란 없다. 지금 그는 어엿한 박사 기업인이다. '의지의 한국인'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강 회장의 인생은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건축업을 하는 부산의 자형 집을 찾아간 그는 공사 현장에서 하루 종일 자갈과 모래를 지고 나르며 돈을 모았다. 그 돈으로 야간 기술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땀다. 막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졸음을 쫓아내며 공부한 '주경야독'의 고달픈 삶이었다. 그리고 공군 기술병으로 입대해 '실무' 경력을 차근차근 쌓았다.

“1978년부터 3년간 김해 공군부대에 근무하면서 9홀 퍼블릭 골프장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등 제 사업 인생에 밑거름이 되었어요.”

제대한 그는 부산의 대형 건설기업에 입사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디뎠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돈을 벌기 위해 리비아행을 택했다. “당시 건설경기가 호황기에다 중동 붐이 일었고, 임금도 국내에 비해 2배 이상 되었기에 2년만 고생하자고 결정했죠. 갔더니 사막에서 불어 닥치는 열풍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강 회장은 술과 관련된 재미있는 리비아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외교국가에서 금주는 당연지사.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이 그걸 어떻게 견디나. 밀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쌀과 야자수 열매, 그리고 이스트(효모균)를 섞어 물어두면 후끈한 지열로 단 하루 만에 ‘기똥찬’ 막걸리가 된다고. 문제는 냄새. 현지 경찰이 수시로 덮쳐 뒤지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냄새를 없애야 했다. “막걸리 통에 파이프를 연결시켜 물속에 담가두면 신기하게도 술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한국인들의 천재성은 막걸리에 그치지 않는다. 막걸리를 낮은 불로 증발시켜 보드카만큼 독한 소주까지 만들어냈다. 특히 주민들이 내다 버리는 참치 대가리와 가오리로 회를 쳐서 거하게 술잔치를 벌였단다.

귀국한 그는 여러 건설업체를 전전하다 마침내 개인회사(명성건설)를 세우고, 이후 법인(범창종합건설, 강호건설)을 잇달아 설립하며 승승장구한다. 그러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야간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모를 썼으니 ‘인간 승리’가 따로 없다.

그런데 학위가 묘하다. 토목학사에 정치학 석사, 공학 박사라니. 그가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때가 있었다는 뜻이다. 사실 그는 사업 못지않게 사회봉사 활동에도 엄청난 열정을 쏟는다. “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와 영도라이온스클럽 회장, 영도장학회 추진위 간사, 그리고 전국 최초의 다리 축제인 영도다리축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에 나름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은 봉래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에게는 영도장학회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발족 당시 3,300만원을 쾌척했던 기분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장학회는 무럭무럭 자라나 현재 기금이 무려 60억원에 이른다고.

강 회장의 그런 광폭 행보가 자연히 정치로 연결되었을 터. 주민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며 지역을 누벼온 그를 정치판이 그냥 봐 둘리만무할 터이다. 하지만 그는 5년 전 정치를 접었다. 원래 아무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좌절과 실망에 휩싸였고 정치와 절연하기로 결심했다. “선거 때가 되자 지역일꾼이 아

닌 낙하산 공천, 일명 ‘가방모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정치의 민낯을 느꼈습니다. ‘인생 망치겠구나’란 생각이 들더군요.”

강 회장은 정치를 버리면서 골프도 그만뒀다. 대신 축구에 온 힘을 쏟는다. 올해 영도구 실버축구팀 감독을 맡아 부산지역 우승을 일궈냈고, 내년 전국대회를 열심히 준비 중이다. 축구마니아가 된 까닭을 묻자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이라고 즉답했다. “팀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야 되는 경기가 축구입니다. 한마음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는 항상 노력해왔다. 일할 때는 모든 열정을 쏟고, 놀 때는 화끈하게 즐기자는 신념을 갖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일에도 만사를 제쳐두고 참여할 정도로 남다른 애정을 보인다. 협회 운영위원, 포장공사사업 분과위원장, 부산전문건설기술위원회 부위원장 등 그가 맡고 있는 직책들이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이제 강 회장은 또 한 번의 화려한 도약을 꿈꾼다.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지금 그는 역발상으로 투자 확대를 결정했다. 현재 봉래동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직원도 더 뽑을 계획이다. 사업 분야를 내년부터 토목에서 건축으로 넓힌다는 복안을 세웠다. 장자가 말했다. ‘정해진 길이란 없다. 길은 걸어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그도 외친다. ‘나의 성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성공은 내가 만들어간다’고.

글 최원열





도전정신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역경을 이겨낸 정열적인 건설인

“즐기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백철(59) (주)연동 대표이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열적인 건설인이다. 그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다. 날카로운 게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하다. 현실을 주시하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그가 사무실에 내건 글을 보자. ‘호우지시절 당춘내발생(好雨知時節 當春乃發生)’. 시성 두보가 쓴 시 ‘춘야희우(春夜喜雨)’의 첫 구절이다. 좋은 비, 즉 단비는 시절을 알아, 봄이 되니 곧 내려 만물을 살려낸다는 뜻. 타이밍(때)의 중요함을 일깨운다. 그가 왜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걸까?

기술고시를 준비하던 그는 1988년 지방직(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덜컹(?)’ 합격했다. 장남인 그가 가정을 꾸렸기에 다급한 마음이 앞선 데다 실력도 점검할 겸 시도했는데 최상위권 성적으로 합격 일주일 만에 부산진구청 발령을 받았다고. “당시 5명이 발령받았는데 3명은 곧

바로 대기업으로 가거나, 중동 붐을 타고 해외로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공무원이 좋았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거든요.”

이어 부산시상수도 사업본부로 옮겨 전문 분야에 발을 내디뎠다. 오거돈 현 부산시장이 당시 본부장을 맡았던 시절이었다. 한껏 부푼 꿈을 안고 들어선 공직사회, 하지만 그는 6년 만에 실망하고 만다. “일을 열심히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수 없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예 귀를 닫더군요. 연공서열에 철저한 ‘단힌 시스템’이었지요.”

반 대표는 상수도관 굴착에 관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도로 포장 후 일정 기한이 지나야 굴착이 승인되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심을 갖지 않다가 공무원을 그만둔 수년 후에야 시행되더군요. 비합리적인 굴착 규정으로 인해 새 건물에 수도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부정부패가 개입될 수밖에요.” 이만하면 그가 두보의 시를 내건 이유를 알 만하지 않나.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수년간 상수도 관련 ‘알바’를 하다 1998년 ㈜연동을 설립하고 전문건설업에 뛰어든다. 힘든 역경이 끊임없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관급공사가 대부분인 사업에서 입찰하는데 200개가 넘는 업체가 덤벼드니 낙찰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공사를 따더라도 숙련된 인력이 모자라 힘들기는 마찬가지. 게다가 공사의 어려움이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였다.

“덕산정수장 관할 대형관로 누수 수리 공사를 사흘 만에 겨우 마쳤는데 갑자기 수압이 높아지면서 수관교가 터져버렸습니다. 현장에 바로 달려가 50시간 이상 잠 한숨 못 자고 일에 매달려야 했어요.” 그런 난관들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대단한 인내력의 소유자라 하겠다.

하지만 반 대표는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무엇보다 폐지된 시공참여제 제도를 되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집장’과 ‘오야지’의 장점을 고려해야 해요. 그들의 인력 동원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가 하도급이나 출혈경쟁에 따른 공사원가 상승 부담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현재 전문건설업체들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인력 확보. 일거리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직원을 채용할 텐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공사 때마다 이른바 ‘인력 돌려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에서도 사정을 잘 알아요. 발주 공고를 할 때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무려 두 달간으로 늘려줄 정도니까. 그런데도 매년 상반기에 공사의 80% 이상을 발주해버리니 문제죠.”



반 대표는 전문건설 분야는 최저임금과 전혀 상관없다고 자랑하면서 중년층의 관심을 거듭 당부했다. 건축 배관의 경우 일수로 3년, 대략 5년 일하면 실기시험을 거쳐 인정기능사 자격을 딸 수 있다. “볼트와 너트 죄기 등 일이 비교적 단순하고 수월합니다.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험을 쌓으면 일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일 자리 고민하지 말고 도전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상하수도 관련 사업 전망을 묻자 그는 “노후관 개량에서 유지 관리 쪽으로 가는 추세”라면서 “새로운 공법과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적한다. 기득권에 얽매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거다. “서울에서는 새 공법을 제시하면 ‘우리가 처음이냐’고 묻는 반면, 지방에선 ‘서울에선 성공했느냐’며 한발 물러섭니다.” 사정이 이러니 업계에서 신기술과 신공법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밖에. 하지만 반 대표는 실망하지 않는다. 오 시장의 적극적인 시정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시장께서 상하수도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견해를 갖고 있기에 앞으로 많은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을 즐기자.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반 대표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경구다. 저 찬란히 빛나는 ‘논어’의 명구를 기억하는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렇다. 즐길수록 발전이 빨라지고, 배움과 익힘이 깊어지는 법.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일과 누군가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의 엄청난 차이를 생각해보라.

글 최원열

Story 01

나이별로 없는 것

- | | |
|------------|---------------|
| 10대 철이 없다. | 60대 낙이 없다. |
| 20대 답이 없다. | 70대 이가 없다. |
| 30대 집이 없다. | 80대 처가 없다. |
| 40대 돈이 없다. | 90대 시간이 없다. |
| 50대 일이 없다. | 100대 다 필요 없다. |



Story 02

중화음식점과의 신경전

짜장면을 시켰는데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화가 나서 전화를 했다.

손님: 중국집이죠? 아까 짜장면 시켰는데...

점원: 벌써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손님: 아, 아쉽다. 탕수육 하나 추가하고 싶었는데...

점원: 잠깐만요! 출발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했네요.

손님: 정말요?

점원: 예, 출발 안 했네요.

손님: 그럼 다행이네요. 모두 취소할게요!



“

이 회사는 **답이 아니라
질문에 의해** 운영된다.

-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

”

MANAGE- MENT

이달의 경영어록

“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
아인슈타인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시행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24일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59호, 2018. 7. 24.)

- 사회적기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대(영 제30조 제1항 제2호)
 -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시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인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

나.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9호, 2018. 7. 24.)

-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

2. 시행일자: 2018. 7. 24.(화)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개정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령
제65호, 2018. 7. 3.

1. 개정 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통일(제68조 제1항, 별표1 삭제)

2. 시행일자: 2018. 7. 3.(화)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9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1. 개정 주요내용

가. 하도급업체 승인의 공정성 제고(제1장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 발주 시 하도급 가부 및 승인절차를 공고하고,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실적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

나. 법정 보험료를 인상분에 대해 사후정산 시 반영토록 의무화(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 계약이행시기에 법정 보험료를 인상 시 이를 근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토록 규정

2. 시행일자: 2018. 7. 23.(월)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14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공포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1. 개정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하여 건설기술인의 위상 제고

나. 현행 시정명령 대상 중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문화(제81조 제10호)

2. 시행일자: 2019. 2. 15.(금)부터

※ 제81조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6월 27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9006호, 2018. 6. 27.

1. 개정 주요내용

○ 공공공사의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별지7 제2호 러목)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러. 법 제81조 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 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1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 시행일자: 2018. 6. 27.(수)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PART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7일 건설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개정 주요내용

- 건설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행정처분 강화
(현행) 1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개정) 2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2. 시행일자: 2018. 8. 7.(화)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공포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14일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공포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42호, 2018. 8. 14.

1. 개정 주요내용

- 법 위반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추가

2. 시행일자: 2018. 8. 14.(화)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0일 개정·공포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9042호, 2018. 7. 10.

1. 개정 주요내용

- 가.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구체화(안 제9조의2)
- 거래 당사자인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상승 시 그 상승의 정도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가능
- 나.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안 제11조)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절차 종료 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사항 규정(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분쟁 경위 및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2. 시행일자: 2018. 7. 17.(화)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가 7월 17일 제정·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시명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12호, 2018. 7. 17.)

2. 경영상 정보의 종류

- 원가에 관한 정보, 매출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

2. 시행일자: 2018. 7. 17.(화)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공포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범위 확대 (월 20일 이상 ⇒ 월 8일 이상)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7월 31일 개정·공포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1.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범위 확대

- 월 20일 이상 → 8일 이상

2. 시행일자: 20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시행 전 기 진행 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20일 기준 적용, 2020. 7. 31.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이 확대(20일 ⇒ 8일)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을 인상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가 7월 26일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공포일자: 2018. 7. 26.(목)

나.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2.49%	4.5%
건강보험료 요율	1.70%	3.12%

2. 시행일자: 2018. 8. 1.(수)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9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고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03호, 2018. 8. 9.

1. 개정 주요내용

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제17조 제1항)

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사유에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을 추가(제23조 제1항)

2. 시행일자: 2018. 8. 9.(목)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국토교통부에서 8월 14일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공포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1.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명칭 변경(제2조 등)

2. 발주자·사용자의 부당요구 금지(제22조의2 신설)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 관련 발주자·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3. 시행일자: 2018. 12. 13.(목)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31일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호, 2018. 8. 31.

1.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명확화(제6조)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직접비를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견적 등에 따라 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을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

2.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제출시기 명확화(제8조)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초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3. 시행일자: 2019. 1. 1.(화)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즈넉한 가을의 산사(山寺),

천년고찰 금정산 범어사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짙게 배였다. 깊어가는 가을을 그냥 보내기 아쉽다면, 처마 끝 청명한 풍경소리를 벗삼아 가을 날을 만끽하러 금정산 범어사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붉게 물든 숲과 함께 숨 쉬며 금정산에 핀 단풍을 마음에 담노라면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글 송정은

금샘에서 노닐던 하늘의 물고기, 범어사

금정산 기슭에 자리 잡은 범어사는 범어사역에서 내려 산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버스가 산 돌레를 돌면 쪽쪽 뻗은 나무들 사이로 붉은 가을 단풍이 두 눈을 가득 채운다. 범어사로 들어가는 산길은 잘 정비돼 있고, 나무들이 만들어 낸 시원한 그늘도 있어 걷기에도 안성맞춤이다. 걷는 동안 바람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등 한껏 자연의 소리를 만끽할 수 있다.

신라 시대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범어사는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영남 3대 사찰로 꼽힌다.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창건설화에 의하면, “금정산 산정에 세 길 정도 높이의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우물이 있다. 황금색 물이 항상 가득 차 있고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한 마리의 금빛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범천(梵天)에서 내려와 그 속에서 놀았다고 하여 ‘금빛 나는 우물’이라는 뜻의 금정(金井)이란 산 이름과 범천의 고기, 곧 범어(梵魚)라는 절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범어사는 역사적으로 많은 고승대덕을 길러내고 도인을 배출한 수행사찰로 오랜 전통과 많은 문화재가 있는 곳이다. 범어사 경내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조계문, 삼국유사, 대웅전, 삼층석탑 등이 있다. ‘팔상독성나한전(八相獨聖羅漢殿)’이라는 독특한 불전도 있는데, 팔상전과 독성전, 나한전을 하나의 건물 속에 꾸며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조형미가 있다.





🌸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곳

범어사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 문인 보물 제1461호 조계문을 지나야 한다. 기둥이 일자로 나열돼 있다고 해서 일주문이라고도 한다. 범어사의 일주문은 여느 사찰의 나무 일주문과 달리 거대한 4개의 돌기둥이 웅장한 지붕을 받치고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일주문 중 최고의 걸작이라 평가받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 두 번째 문인 천왕문과 마지막 문인 불이문을 지나야 비로소 인간 세계에서 부처가 사는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천왕문에서 불이문으로 가는 길목 좌우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심겨 있어 더욱 고요한 운치를 느낄 수 있다.

불이문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사찰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보물 제434호 대웅전이 보인다. 사찰의 중심인 대웅전 앞에 서면 경내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또한 범어사 대웅전은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정교한 건축기술이 동원된 조선시대 불교문화의 대표적 건축물로 꼽힌다. 손으로 깎아 만든 주춧돌과 기둥, 정교하게 장식된 처마의 짜임에서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의 구조미를 엿볼 수 있다. 살랑대는 가을바람이 불면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에서 맑은소리가 퍼져나간다. 풍경에 달린 물고기 모양은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한순간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수행, 공부에 전념하라는 상징이라고 한다.

대웅전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금정산 너덜경(암괴류)으로 나가는 돌담길을 만난다. 3단의 석재 위에 다시 돌과 흙으로 담을 쌓았는데 수십 년 묵은 담쟁이가 돌담을 덮고 있다. 담쟁이 위에 가을이 듬뿍 배어 있다. 촘촘히 들어선 전각과 전각이 뿜어내는 정숙한 분위기를 돌담길이 순식간에 반전시켰다.

고즈넉한 가을의 산사는 맑은 하늘과 풍경소리에 몸을 맡길 만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울

가을, 서두름이 오히려 낮설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고요하고 느긋한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도심 한가운데에 호젓이 사색할 수 있는 명찰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행복으로 느껴질 것이다.

〈여행 TIP!〉

범어사문화체험 누리길

범어사역 ▶ 계곡 ▶ 옛길(정수장) ▶ 삼나무숲 ▶ 범어사 주차장 ▶ 등나무길 ▶ 범어사 (약 2.05km, 소요시간 1시간)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에서 범어사 입구까지 조성된 '문화체험 누리길'은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자연이 주는 힐링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원하게 흐르는 하천과 향긋한 편백 숲을 따라 길을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LH「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수립 관련 안내

우리 협회는 LH 사장과의 간담회 개최 및 T/F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LH에서는 공공기관 처음으로 공기연장 시 하도급자의 간접비 지급방안을 추진하는 등 우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한「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LH 적정공사비 지급방안 주요내용

1. 하도급자에 대한 적정공사비 지급 추진
 - 하도급자의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관련 비용 지급
 -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자에 대한 간접비 지급방안 마련 추진
2. LH 자체대가 개선
 - 표준품셈보다 낮은 LH 자체단가 및 자체 견적단가 현실화
3. 제경비율 합리화
 -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기준 개정 추진
4. 계상근거 불분명 항목 기준 수립
 - 공사위가 계상 근거의 부재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던 공사비 항목을 발굴하여 원가반영 기준 신설
5. 예가 작성기준 변경
 - 투찰금액 상승을 위한 예정가격 상향(설계금액 99% ⇒ 100%) 조정
6. 공기연장 간접비 적정지급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한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7. 설계변경 제도개선
 - 설계변경의 시급성, 적시성 등을 감안한 소요기간 단축, 절차 및 위임전결 간소화 추진
8. 기타
 - 공동주택 착공시기 분산
 - LH 사업특성(지급자체, 공종별 분리발주, 동절기 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 장비·자재·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공사 등에 대한 발주단가 할증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형 건설현장 등 불시 민관 합동점검 안내

국토교통부는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점검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에 있다.

또, 세종시 화재사고(6. 26.)를 계기로 화재 발생, 집중 호우, 건설기계 운영 등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대형 건설현장 등 불시 민관 합동점검 주요내용】

1. 기간: 2018. 7월~12월

2. 주요내용

- 점검대상: 공사비 1천억원, 공정 50% 이상 대형 건설현장
- 점검내용
 -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공사관리자 없이 단독공사 진행 여부
 -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현장 안전관리체계 전반

3. 점검결과

- 안전관리 미흡: 엄중조치(벌점부과,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작업발판 미설치 현장 근절을 위한 집중점검 안내

안전보건공단, 불량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점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발판 미설치 현장 근절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량비계(외부비계 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현장 적발 시 계도 및 작업중지 등의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부산시회는 비계작업 발판 안전성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 점검 주요내용: 외부비계 상의 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현장 집중점검

- 1차 적발 시 계도 후 2차 적발 시 작업중지 등 행정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수행 관리·감독 철저 안내

국토교통부, 발주기관에 문서 시달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 등)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상이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건설사업 관리자 없이 단독 시공할 우려가 있다며 발주청에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문서를 시달하였다.

이에 부산시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 등)의 입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시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의 발주기관 문서시달 주요내용】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준수 철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상주(비상주 시 시공 금지)
- 주요 위험작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에 수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감독
 - * ①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작업, ②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③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④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초과근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지침을 준수하여 대가 지급 철저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로시간 준수 철저, 필요한 조치 사전 시행

3. 건설사업관리 업무 관련 지도·감독 철저

최근 시행 하도급법 활용방법 안내

최근 노무비 등 공급원가 상승 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하도급법이 시행(2018. 7. 17.)됨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완화 및 신속한 분쟁해소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부산시회는 7월 19일 하도급대금 조정권 및 분쟁조정 제도의 활용방안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 7. 17. 시행 하도급법 개정사항 활용방법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확대(제16조의2)

- (개정취지) 노무비 등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증가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을 기존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 시행
 - 공급원가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용을 말함

▶ 조정 신청 프로세스 ◀

- ① 공급원가 변동 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신청
- ↓
- ②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조정 협의 개시 (※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 ↓
- ③ 협의 미개시 또는 합의 불가 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 (적용시기) '18. 7. 17. 이후 최초로 체결·변경·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18. 7. 17. 이전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공급원가 변경·갱신 사유 발생 시 적용 가능
- (활용방법)
 - 공사 수행 중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원사업자에게 당초 계약분 대비 상승률만큼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신청
 - 원사업자 협의 불응 및 합의 불가 시 분쟁조정기관에 조정 신청

2.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제24조의 4, 5, 6)

- (개정취지) 분쟁조정기관의 조정 절차 실효성 담보 및 조정 결과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하도급대금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 그간 애로사항 ◀

- 명시적인 규정 미비로 분쟁조정 진행 중 하도급대금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분쟁종료 등 또 다른 분쟁 및 소송을 야기
- 분쟁조정 결과, 조정 합의가 이루어져 대금지급을 하여야 함에도 피신고인(원사업자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차 법원에 소 제기를 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적용시기) '18. 7. 17. 이후 최초로 분쟁조정 신청 사건부터 가능
 - '18. 7. 17. 이전 접수된 사건은 적용 불가
- (활용방법)
 - (소멸시효 관련) 하도급공사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공사건 중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
 - 공사 종료일 3년 이내 접수 시 채권(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으로 분쟁조정 기간이 장기화 되더라도 분쟁조정 절차 진행 가능
 - (화해효력 부여 관련) 분쟁조정기관의 합의로 분쟁조서(합의문) 작성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 효력 발생
 - 합의문 내용과 달리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압류 집행을 관할 지방법원(통상 채무자의 주소지)에 신청
 - * 집행요청을 받은 관할법원에서 피신고인(원사업자) 재산·통장 등에 압류, 추심(전부)명령 또는 경매 조치
 - 원사업자는 재산 및 통장활용 불가로 압류금액 속히 지급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확대(월 20일 ⇒ 8일) 안내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는 필수!!

부산사회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범위 확대(월 20일 이상 ⇒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2018. 7. 24.)에서 심의·확정됨에 따라 2018. 8. 1.부터 시행되며, 건강보험 또는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됨을 안내했다.

이번 대상범위 확대는 시행일(20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입찰공고가 없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한 공사는 2020. 7. 31.까지 2년간 유예(20일 기준 적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사회보험요율 시행일(2018. 8. 1.) 이후 발주되는 공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사업자 납부분 전액이 공사원가에 반영됨을 안내하는 동시에 전문건설업체에서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안내했다.

■ 주요내용

-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기준 확대(월 20일 이상 ⇒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 20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시행 전 기 진행 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20일 기준 적용, 2020. 7. 31.까지)

- 사회보험요율 인상(사업자 납부분 전액 공사원가에 반영)
 - 국민연금: 2.49% ⇒ 4.5%
 - 건강보험: 1.70% ⇒ 3.12%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입찰공고 없는 경우 원도급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인상된 사회보험요율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계약이행시기에 법정 보험료율 인상 시 이를 근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음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18년 대비 10.9% 인상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저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3호, 2018. 8. 3.)하였다.

1. 최저임금액

- <2018년> 시간급 7,530원 → <2019년> 시간급 8,350원

2. 업종 구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

3. 적용기간: 2019. 1. 1. ~ 2019. 12. 31.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안내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대형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2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불시 감독하고 있다.

1. 점검대상: 용접·용단작업, 화재·폭발 위험 현장 200여 개소

2. 점검내용

- 용접·용단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조치 여부
-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의 화기 사용금지
-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3. 점검결과: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

대한전문건설협회 「법률상담센터」 설치·운영 안내

우리 협회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전문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법률·노무·세무·회계 등 분야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 8. 1.(수)부터 전문건설회관 1층(중앙회, 서울)에 「법률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법률상담센터」에서는 협회 중앙회 실무자와 조합 직원 등 내부자문단이 상시 활동하고, 변호사·노무사·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거래, 대금미지급, 건설관련 분쟁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활용하면 된다.

1. 상담신청 방법

- 상담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상담신청서는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공지사항에 게재
 - FAX: 02-3284-3001
- 유선으로 신청(☎02-3284-3000)

2. 1차적으로 내부자문단 상담 후 외부자문단 지원

- 외부자문단 운영

매주 화요일	매주 수요일	매주 목요일
변호사(14:00~17:00)	노무사(14:00~17:00)	회계(세무)사(14:00~17:00)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안내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중·소규모 건설현장(12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 단속하고 있다.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되는 동 점검은 감독결과 안전관리 불량 시 작업중지 등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근로자가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1. 점검대상: 중·소규모 건설현장(120억원 미만) 600여 곳

2. 점검 주요내용

-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
- ※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

3. 점검결과

-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작업중지
-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즉시 과태료(5만원) 부과

4. 건설업 클린지원 사업

-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 발판 등 안전시설물의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으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건설사업주
 - 지원확대: '17년 200억원 ⇒ '18년 238억원
- 지원조건: 공사규모별 안전시설 설치비용 차등 지원
 - 3억원 미만 65%, 3억~10억원 미만: 60%, 10억~20억원 미만: 50%
 -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지도 미체결 현장 지원불가
- 지원한도: 같은 현장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동일 사업장 연 2회 지원횟수 제한
- 지원문의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건설안전 ⇒ 클린사업장조성지원(건설)
 - 안전보건공단 본부 건설안전실: ☎ 052-703-0672
 -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520-0510~5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안내

정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참여주체인 발주청, 사업관리자 및 시공사가 권한에 맞는 책임을 갖고 견실하게 시공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 7. 12.)했다. 이에 부산시회는 8월 13일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안내했다.

■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주요내용

1. 발주청 → 능력 있고 배려하는 일류 발주청

○ 발주청 직원 역량 강화

- 공사책임자 첫 임무 시작 전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 의무화
- 발주청 직원 역량회복을 위해 소속 인력으로 사업관리자 배치충족 시 직접감독 확대 허용

○ 실수 있는 적정공기 확보

- 주 52시간 근무제 부응하고 휴일공사 단계적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 시행
- 토요일 안전확보 관리, 일요일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 사전승인 후 공사 허용
- 주 52시간, 일요일 휴무제 등 작업가능일 반영한 표준공기 산정지침 개발
-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 적정공기 도입 등 감안한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 및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

2. 사업관리자 → 품질·안전 파수꾼

○ 충분한 인원 배치

- 적정인원 사업관리자 배치토록 실시설계 완료 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토록 Eng업계의 원가 구조, 업무량 분석 등 대가개선 방안 마련

○ 현장 관리권한 강화

- 안전·품질 부실할 경우 사업관리자가 공사 중지 명령권 의무화
- 발주청 부당지시에 대한 저항권 도입 및 불이익 준 경우 과태료 부과

○ 역량과 책임 강화

- 20억원 이상 사업관리자 Eng 중심제 적용, 기술력 위주 평가
- 용역평가결과 차기 용역 PQ 반영
- 사업관리자가 구조물에 중대결함을 유발한 경우 형사처벌 근거 마련

3. 시공사 → 품질·안전관리 최우선 기업문화 조성

○ 품질관리 안전체계 구축 유도

-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평가의 품질·안전 평가 항목 구체화로 변별력 강화
-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안전관리 책임자 등 현장 책임자급은 정규직원 배치 유도

○ 안전점검 내실화

- 점검업체가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선정, 관련사업비 독립 편성하여 점검 독립성 강화
- 점검보고서 국토부 제출, 점검내용 적정성 평가·공개하여 점검기관 수준 제고

○ 불량 자재·인력 관리 강화

- 불량자재 정보 공유 및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 전 과정 실시간 관리하는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현장책임자 단위 시공 실명제 도입 추진 및 시공 참여자별 작업내역 기록을 관리하는 선진 공정관리체계(WBS) 도입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안내

산림청에서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산림청 공고 제2018-245호, 2018. 8. 8.)하였다.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현황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담당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03동 301호	02-880-4697	정슬기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11, 광노빌딩 4층	02-967-5048	김성민
신구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9, 신구대학교식물원	031-724-1622	조인영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459동 302호	055-772-1838	김민영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703호(글로벌프라자)	053-950-5746	김재환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Gnr Hub 3~4층	062-530-2080	위지수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42-821-7880	김현숙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산림환경과학대학 1호관 002호	033-250-7225	김두형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043-220-6172	김성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본부 별관 3층	063-219-5238	유선숙

전문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시 신규보증 제한 개선 안내

최근 회원사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요청)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신규보증을 제한한다는 애로사항이 제기(2018. 6. 20., 제2차 공정거래정책위원회)된 바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업무개선을 적극 건의한 결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하자보수요청 계류건 수가 3건 이상 또는 계류잔액이 출자금의 2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보증 제한 및 보증수수료 할증을 적용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2018. 8. 17.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부산시회는 8월 17일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업무지침 개선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
신규보증제한	지점실무상 보증 제한 미적용 - 하자보수요청 장기 미해결, 계류건이 다수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증 제한	하자보수요청 계류 건수가 3건 이상 또는 계류잔액이 출자금의 2배 이상
보증수수료할증	보증수수료 할증적용 원칙 - 할증예외등록 후 할증 미적용	하자보수요청 연간 3회 이상 또는 계류잔액이 출자금의 2배 이상

※ 상기 보증제한 및 수수료할증의 예외기준에 해당하여도 채권침해 우려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증규정 제9조2항에 의거 보증제한 및 수수료 할증적용 가능

건설현장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 철저 안내

고용노동부는 우리 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재 사망사고 감축 TF를 구성·운영하고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지게차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자료를 제공·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면 된다.

■ 지게차 사고사망 예방 3대 원칙

1. 자격자 운전
2. 시야 확보
3. 안전띠 착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산사회는 8월 20일 최근 고용노동부가 마련·보급한 휴게시설 설치원칙, 위치, 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회원사에 안내했으며, 동 가이드는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s://www.kosca21.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태 집중점검 안내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 등 점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현장 점검 결과 드러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반영하여 품질관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제도 미숙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품질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위주로 실시되므로, 품질관리 미흡에 따른 불이익(작업중지, 고발조치 등)을 받지 않도록 부산시회는 회원사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태 집중점검

1.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2. 점검결과: 공사중지, 시법기관 고발 등

3.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미수립
- 대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토목공사 5억원 이상, 연면적 660㎡ 이상
- 품질시험실, 장비, 건설기술자 미배치

※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2억~100억원: 품질관리 초급 1명 이상
- 100억~500억원: 품질관리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
- 500억~1,000억원: 품질관리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 1,000억원 이상: 품질관리 특급 1명, 중급 2명 이상

-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타 업무와 겸직 불가
- 교육 미이수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선임 불가
-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미실시 등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태 점검 안내

가설구조물 안전성·품질시험 이행 실태·관리자 배치 여부 중점 확인

국토교통부는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2018년 10월 초까지 점검하고 점검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공사 중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에 있다.

동 점검은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품질시험 이행 실태 및 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되고, 특히 가설구조물 안정성 확인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에 있어 부산시회는 9월 5일 관련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안내했다.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정부합동 단속



정부는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을 근절하고자 '18년 하반기(9~11월) 중 「건설현장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1. 주요내용

○ 건설현장 외국인력 취업가능 비자

업무분야	비자종류
단순노무	· E-9(비전문취업): 체류기간 3년(연장 시 4년 10개월까지 가능) · H-2(방문취업): 체류기간 3년(연장 시 4년 10개월까지 가능)
기능공 (단순노무 불가)	· F-2(거주): 체류기간 3년 또는 5년 · F-5(영주비자), F-6(결혼비자) · F-4(재외동포): 체류기간 3년(연장 가능) ※ 건설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 필요

○ 취업불가능: C-3(관광), D-2(유학), D-4(어학연수), F-1(방문동거) 등

2. 주의사항

○ 고용허가제(H-2, E-9) 근로자 관련 중요 준수사항

- 채용 전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필수
- H-2 근로자 고용 시
 - ▶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신청 또는 자율구인(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 민간알선 금지
 - ▶ 신분(취업가능 비자 여부) 및 취업교육 이수 여부 확인
 - ▶ 근로개시 신고(14일 이내) 및 고용 변동신고(15일 이내) 준수

○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동일 적용

○ 불법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사업주(고용주) 처분 강화

- 적발 시 시정지시 절차 없이 2~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고용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철저 안내

건축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시공자 등이 입주자에게 손끼임 방지장치를 나누어 주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동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여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므로 상기 사례는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다.

이에 부산시회는 9월 1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용승인 등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안내

상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대비 4.93% 상승
203,332원... 일반직종 190,702원

올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일평균 임금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 4.93% 오른 203,332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시회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 근거로 활용되는 「201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해당 조사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잠수부는 6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건설 주요 15개 직종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작업반장 145,013원 △보통인부 118,130원 △특별인부 141,507원 △비계공 208,195원 △형틀목공 197,929원 △철근공 199,266원 △콘크리트공 199,737원 △포장공 162,899원 △조적공 172,091원 △건축목공 188,225원 △방수공 139,009원 △미장공 188,228원 △타일공 187,087원 △배관공(수도) 177,266원 △건설기계운전자 181,074원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임금실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유지관리비용 지급 및 하자책임 제외 건의 안내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폭염, 가뭄, 태풍, 홍수 등)로 인해 조경식재공사를 시공한 회원사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발생한 조경수목의 유지관리(관수 등) 비용뿐만 아니라, 수목의 고사로 인해 발주처와의 하자처리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전국의 발주기관에 애로사항 및 정책·발주에 관한 협조요청 건의서를 전달하고 9월 1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협조요청 건의서에는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조경식물 유지관리(관수)비용을 발주기관에서 부담해 줄 것과 관계법령 및 시방서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거나 시공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로 인해 고사된 조경식물과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화문, 내화충전구조 등 품질관리 철저 안내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방화문 설치 시 품질이 확인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하나, 최근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조 및 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불량 방화문 시공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방화문 등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철저히 확인·시공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는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화충전구조 미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덧붙였다.

1.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확인

- 기업지원플러스(<http://www.g4b.go.kr>)에서 진위여부 확인 가능

2. 위반 시 제재사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Q & 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3월 27일 공포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헛갈리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 금지법. 2018년에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 사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다.

CASE 01

수수금지 금품 등 관련 1

Q 공직자 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 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골프장 이용료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골프장 이용료 우대 등 할인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골프장 이용료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 골프장 이용료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 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합니다.



CASE 02

수수금지 금품 등 관련 2

Q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음식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이하)를 넘지 못하므로, 5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CASE 03

수수금지 금품 등 관련 3

Q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등 사이에서 예외사유 성립이 가능합니다.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CASE 04

수수금지 금품 등 관련 4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CASE 05

금품 등 신고처리 관련 1

Q 공직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인도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 대상입니다.

CASE 06

금품 등 신고처리 관련 2

Q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CASE 07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1

Q 외부강의 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인가요?

A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CASE 08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2

Q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하고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하고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신고 및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CASE 09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3

Q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07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유권해석

01

하도급 통보 및 저가심사 유무 (하도급 적정성심사)

[질의]

당 현장에서 A공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통보 완료함. 통보 시 하도급률이 82% 미만이며 발주처에서 하도급 저가 심사를 하여 85점을 받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음.

그런데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정산 후 하도급 정산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하니 하도급 계약 금액이 감액되어 하도급저가심사시 85점이 나오지 않음.

하도급통보 및 저가심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인데 공사가 끝난 정산변경에 대해서도 하도급률 82% 미만일 시 저가심사를 하고 저가심사 결과 점수가 85점 미만일 시 하도급내용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적정 품질을 확보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심사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하도급계약이 종료된 경우로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라면 적정성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거] 국토해양부>민원마당>유사민원 (2011. 12. 22.)

유권해석

02

하수급인이 직접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하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음.

[근거] 건설경제과-4998 (2010. 11. 19.)

건설판례

0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공사대금]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접 지급합의 후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

[4]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5]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심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파기하여야 하는 범위(=원심판결 전부)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5]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중세도시에 착륙한 우주선

쿤스트 하우스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그라츠는 조용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도시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도시 그라츠에 2003년, 새로운 랜드마크가 등장했다. 바로 현대미술과 동시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쿤스트하우스 그라츠 현대미술관이다.

영국 건축가 피터 쿡과 콜린 풀러니에가 디자인한 쿤스트하우스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파격적인 외형 때문에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중세 건축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현대 건축물 쿤스트하우스는 적절한 조화를 통해 과거와 미래가 잘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술관은 유선형 4층 건물로 푸르스름한 색의 유리벽이 반짝이는 외관 때문에 마치 우주선처럼 보이기도 하다. 미술관의 외벽은 두께 15mm의 투명한 청색 아크릴판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크릴판 아래로 930개의 원형 형광 전구가 설치돼 있다.

지붕에는 16개의 관이 연체동물의 빨판처럼 튀어나와 있다. 내부엔 환기 장치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외관의 유리벽에 구멍을 뚫어서 자연 환기를 유도한다. 미술관은 '외계인'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건물 외부에서 매시 50분마다 5분 동안 초저음의 진동이 나도록 설계했다.

이 미술관이 세계 건축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꼭 가 봐야 할 건축물로 꼽히는 이유는 이런 독특한 외형 때문만은 아니다. 도시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반영해 설계한 미술관은 도시의 해묵은 과제를 시원하게 풀어주며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도급 분쟁 해법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서 작성이 부실하면 분쟁처리도 부실

전문건설업을 하는 A 사장이 2015년 6월에 B 종합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친구인 법무사에게 의뢰해 신고서 작성을 그럴듯하게 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왜 그럴까?

신고서 작성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담당사무관은 보통 수십 개의 사건을 맡고 있다. 사건처리는 접수 순서대로 조정절차를 거쳐서 불성립한 경우에는 공정위로 이첩돼 처리되는데, 사건이 단순하면 곧바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한다. 하지만 복잡하거나 신고서가 잘못돼 있으면 계속 서류보완을 요청하면서 시간이 흐른다.

A 사장이 제출한 신고서를 봤다.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작성하듯 돼 있으니 사무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즉 그들이 평소에 작성하는 보고서 양식이 아니기에 일단 눈에 거슬린다. 이 신고서를 다 해체해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 서류 보완이라는 시간을 벌면서 뒤로 미룬다.

내용을 봤다. 억울하다는 내용을 하도급법에서 이것저것 가져와 신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공정거래법과 민법의 법률 조항도 가져와서 신고서를 작성했으니 이를 보는 사무관은 참으로 난감할 것이다.

이 경우 사무관은 이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신고서를 쳐박아 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사건도 수없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식이나 내용이 부실하면 사건 처리가 더뎠거나 안 된다. 그래서 벌써 2년이나 지났다. 그런데 또 최근 와서 추가로 신고할 내용이 있다고 찾아온 게 아닌가? 하도급사건은 소멸시효가 3년이다. 2013년도의 일을 지금에 와서야 신고한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난감하다. 처음부터 하도급법에 신고할 만한 내용을 확인해서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했다. 그랬다면 훨씬 풍부한 내용의 신고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결국 하도급관련 불공정거래 신고는 그 내용 면에서 꼭지별로 잘 정리해야 하고, 형식면에서 공정위 사무관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양식대로 작성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이 지나도 사건처리가 안 된다. 이를 두고 신고사건 처리가 늦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신고가 부실하면 처리도 부실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공정거래연구소 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회원사 질의·응답



Q.01

2018. 8. 1. 이후 계약 체결된
하도급공사에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20일 이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인지?
아니면 8일 이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인지 여부?

>> **하도급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아닌 해당 공사의 원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2018. 8. 1. 이전이면 20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원도급업체에 원도급 계약일자 확인이 필요하며 추후 공단으로부터 지도점검 시 가입대상 유무 확인을 위해 원도급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본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Q.02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타 산업과 같이 8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가입토록
확대 시행되었는데 그럼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는
안 해도 되는지 여부?

>>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함.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사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하므로 추후 지도점검 시 가입대상 누락 등으로 보험료를 소급·추징당할 수 있음.

따라서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약서에 보험료 사후정산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반영되어 있다면 반드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함.**

Q.03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3자 간에 하도급공사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주자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도급사에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공사대금을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하도급사에 직접지급하기로 합의 하는 것임. 따라서 공사대금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도급사에게 발행되어야 함.

Q.04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사유가 있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Q.05

현장대리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에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 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음. 현장 대리인의 경우 간접노무비 대상이므로 사후정산 대상이 아님.

Q.06

이미 총액입찰방법으로 계약집행된 공사의 도급금액을 당초 설계예산 내역서상에 일위대가표 계산 착오로 인하여 설계금액 일부가 과다계상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음.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확대 시행



- 1) (입찰공고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원도급 계약일 기준
- 2) (경과조치)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이 영 시행 전**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2020. 7.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경과조치 적용 대상공사 입증 서류(공단에 제출)는 추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을 통해 확정 예정
 - ※ 경과조치 종료 후 '20. 8. 1.부터는 모든 건설공사 사업장에 8일 기준 적용

01 주요내용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 대상 범위 확대 시행(월 20일 이상 → **8일 이상**)

1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공포('18. 7. 31.)

※ (건강보험) 공단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 기준 적용(확대)

- (시행) '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¹⁾ 하되 시행 전 기 진행 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²⁾ ('20. 7. 31.까지)

2 (국토부)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개정('18. 7. 26.)

구분	공사원가 반영 요율	
	개정 전	개정 후
국민연금	직접노무비×2.49%	직접노무비×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률 요율(4.5%)
건강보험	직접노무비×1.7%	직접노무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율의 1/2(3.1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7.38%를 별도로 공사원가에 반영

※ 시행일('18. 8. 1.)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입찰 공고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일 기준)



02 발주 시점별 적용기준 판단

- ① **입찰공고일**(입찰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원도급 계약일)이 '18. 7. 31. 이전인 경우
 - ▶ 원도급, 하도급 계약시점에 불문하고 **종전기준(20일) 적용**
 - ▶ 경과조치(2년유예) 종료 후 '20. 8. 1.부터는 **확대기준(8일) 적용**
- ② **입찰공고일**(입찰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원도급 계약일)이 '18. 8. 1. 이후인 경우
 - ▶ 원도급, 하도급 모두 **확대기준(8일) 적용**

03 유의사항

- ①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 필수**(※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

※ 사업장 분리적용 요건 ①,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공사계약기간 1개월 이상
- ② 계약서에 사후정산내용 포함 또는 도급(하도급)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반영

- ▶ 대상확대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기준이 종전의 본사기준(8일)과 동일해졌다고 하여 사업장 분리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단위별 7일 이하 근로자의 신고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② **건설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원천징수 반드시 필요**
 - * ['18년도 기준] 국민연금(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보수월액의 3.12%)
 - ▶ 가입대상 확대로 인해 사회보험 납부액이 증가함에도 종전처럼 근로자분까지 대납할 경우 업체 부담이 급증되므로, 철저한 인력관리와 **근로자의 협조 유도를 통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 필요**
- ③ **신규 발주공사 계약 시 공사원가 적정 반영여부 확인 요망**
 - ▶ 금번 확대 시행 정착과정에서 **종전 요율 반영(또는 미반영)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스란히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 계약 시 적정 공사원가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발주자·원수급인에게 정당하게 요구
- ④ **성실신고·납부를 통해 지도감독 등으로 인한 추가적 피해 예방**
 - ▶ 진행 중 공사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향후 2년간('20. 7. 31.까지) '8일' 현장과 '20일' 현장이 혼재될 것이므로 **계약단계부터 올바른 적용기준 설정, 인력운용 및 신고대상 관리 필요**
 - ▶ 제도 미숙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축소·누락 신고가 누적될 경우** 향후 공단(연금, 건강)의 지도감독 등 추징 시 **근로자분까지 업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평소 성실한 신고와 납부 필요
- ⑤ **공단의 개정된 업무지침 숙지 및 올바른 적용**
 -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은 금번 확대시행을 반영한 개정 업무지침을 배포·홍보할 예정이므로 동 업무지침 숙지하시어 신고오류 예방 등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 개정지침상 오류, 공단 일선 지사의 기준적용 착오 등 발생 시 협회 문의·협조 및 적극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 노력

09

회원사 현황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18. 7. 1. ~ 9. 30.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가호산업 이 장 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83번길 25, 2층(우동) T. 051-742-5912 보유업종: 토공	 (주)건축사사무소환인 김 병 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530호(우동, 선프라자) T. 051-742-4384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나래건설 김 현 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7, 901호(부전동, 가회빌딩) T. 051-808-2415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
 (주)너른건축 정 자 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실로 52, 2층(남산동) T. 051-518-0009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다원건설 권 영 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73번길 55, 2층(연산동) T. 051-853-0654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	 (주)더원건설 윤 경 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125번길 92(강동동) T. 051-831-6663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주)동광티엔아이 (T.N.I.co.ltd) 김 진 동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59번길 52-10(문현동) T. 051-633-7374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동희건설(주) 김 재 환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6번나길 73-12(구포동) T. 051-342-7811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	 (주)리한건설 송 상 임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78, 3층(명장동) T. 051-522-7666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
 (주)방도기업 정 용 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천로 18번길 17(양정동) T. 051-462-2223 보유업종: 습식방수 도장	 (주)서진산업건설 장 봉 식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69, 308호(온천동, 온천프라자) T. 051-557-6111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	 (주)푸른하늘 최 명 좌	
 (주)유정기업 이 상 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 94번길 17, 2층(초읍동) T. 051-528-1579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	 (주)지수조경 강 지 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89, 3층(구서동) T. 051-931-6165 보유업종: 조경식재	 (주)푸른하늘 하 옥 경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16번길 106(금곡동) T. 051-645-5670 보유업종: 조경식재
 (주)청원건설 유 성 열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27번길 20(서동) T. 051-861-0488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한대건설 김 명 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2111호(재송동, 큐비이센터) T. 070-5101-6770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	 (주)푸른하늘 이 상 범	

●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8. 7. 1. ~ 9. 30.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주)남지개발(대표: 이영규, 충남)	(주)대미안건설(대표: 주삼대, 경북)
두원개발(주)(대표: 이영광, 최재성, 광주)	(주)서진산업건설(대표: 장봉식, 경북)
(주)보림건설(대표: 김기덕, 경남)	(주)성창개발(대표: 김태중, 충남)
(주)삼위건설(대표: 신은정, 충북)	(주)수성건설(대표: 조용근, 경남)
(주)우림조경개발(대표: 박미애, 경북)	(주)신우티엔씨(대표: 강시천, 경북)
원화기업(주)(대표: 이명식, 광주)	(주)영일건설(대표: 이금숙, 서울)
(주)유석산업개발(대표: 박은화, 경남)	(주)우림테크(대표: 강만수, 경남)
(주)크로바조경(대표: 하성환, 경남)	(주)창영엔크린(대표: 장동주, 울산)
태광종합건설(주)(대표: 이상미, 인천)	(주)토브텍(대표: 박정애, 울산)
한도공영(주)(대표: 김미진, 경남)	(주)한승건설(대표: 유장훈, 경북)
-	(주)희림건설(대표: 장일창, 경남)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8. 9. 30.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34	69	연제구	139	222
동구	46	93	해운대구	219	295
서구	26	30	수영구	109	174
사하구	69	91	부산진구	171	235
영도구	23	35	북구	81	106
동래구	172	232	사상구	122	154
남구	91	135	강서구	186	259
금정구	227	338	기장군	199	297
			합계	1,914	2,765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TIP 01

공정하게 제품을 비교해주는 앱, 행복드림

마트에 가면 같은 물건이지만 브랜드만 다른 물건이 너무 많아 선택하기 곤란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행복드림' 앱이면 이런 걱정도 끝이다. '행복드림'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별 성능과 리콜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사용자의 이용 후기는 물론,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 분석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서 상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TIP 02

오늘 우리 동네 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피해가 심해진 요즘, 외출하기 전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보는 것은 필수다.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파악할 방법으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 '우리 동네 대기 정보'가 있다. 무료 앱인 '우리 동네 대기 정보'에서는 미세먼지 2종류,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TIP 03

비행기에 실은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수하물이 다른 지역으로 갔거나 경유지에 머물러 있는 일이 발생한다. 비행기 수하물을 분실했을 때 대처법을 알아보자. 먼저, 공항 내 항공사 카운터를 찾아 분실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접수번호나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인해주는 것이 좋다. 수하물이 확인되면 여행객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달되며 그동안 필요한 생필품 구입으로 지불한 비용 등을 항공사에서 보상에 주기도 한다.

(주)YTN 복지혜택물 가입절차 및 이용 안내

※ 회사 임직원 모두가 가입 가능하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부산사회 회원사가 공식 사이트에 가입 후 이용하게 되면, 가전제품과 패션잡화, 영화티켓,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에서 30%~40% 추가 할인 가능합니다.

01. 가입방법

- ① 인터넷 가입 ▶
협회전용 인증메일 가입사이트(www.ygoon.com/kosca21) 접속
- ② 모바일 가입 ▶
카카오톡(내프로필 → 나와의 채팅) 오픈 후
http://ymall.ygoon.com 입력

02. 회원가입

이메일 인증: 본인이 평소 이용하는 이메일 주소 입력
※ 모바일 가입 경우 이름 앞에 반드시 기업명 기재
(ex. 전문건설 홍길동)

03. 비밀번호 등록(특수문자, 영문, 숫자 포함 8자리 이상)

04. 로그인

05. 복지몰 이용



인터넷 가입 절차

01

www.ygoon.com/kosca21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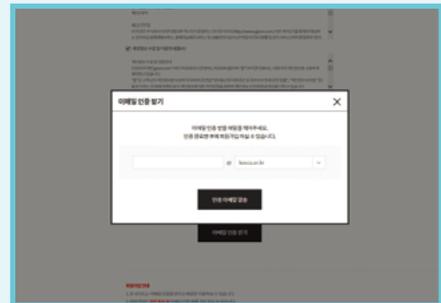
02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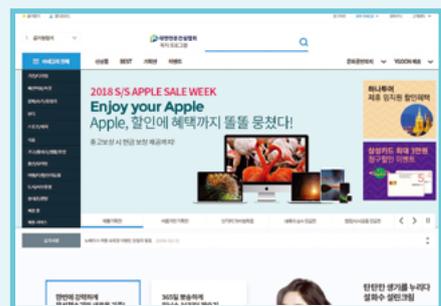
03

이메일 인증



04

로그인 후 이용



10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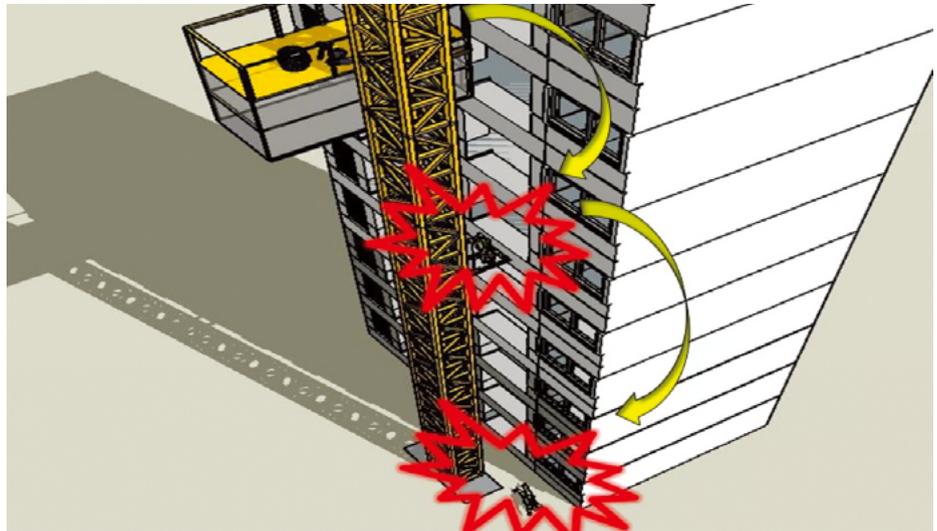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재해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 건설용 리프트 연장설치 중 추락 (사망)

출처 안전보건공단

공사명	천안 ○○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발생일시	'18.06.04.(월), 13:50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충남 천안시	공사규모	지상 25층 19개동 아파트
재해개요	'18.06.04.(월), 13:50경 충남 천안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건설용 리프트 연장설치공이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 지붕상판을 발판삼아 연장작업인 월타이(Wall tie) 고정용 앵커볼트 천공작업 준비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져 14층 월타이에 부딪치고 다시 하부 콘크리트 바닥(H≈45m)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
상황도



안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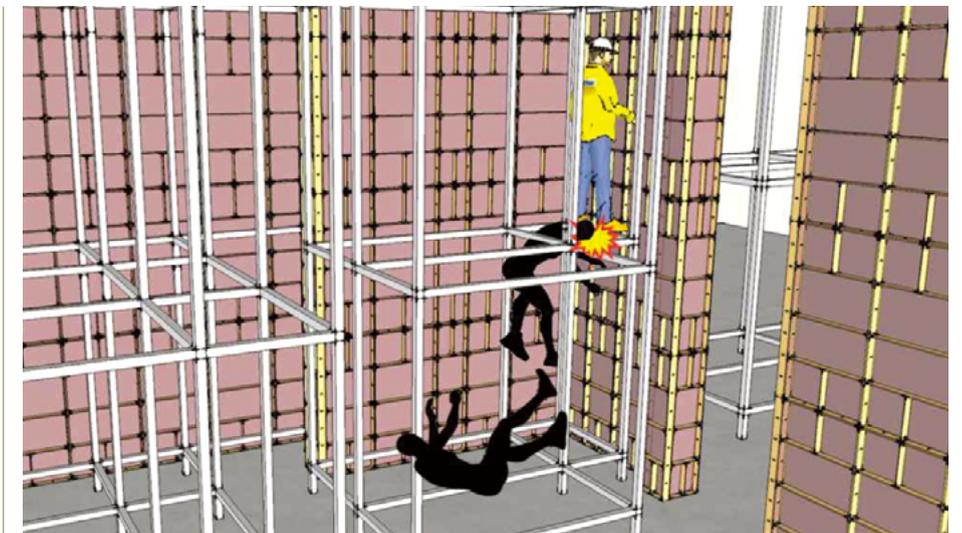
○ 건설용 리프트 연장설치 작업 중 추락방지조치 철저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 지붕상판 내에서의 작업 시(볼트를 풀고 공구를 정리하는 등의 작업준비)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하여야 하고, 마스트와 월타이 앵커볼트 설치(천공) 등은 작업특성 상 부득이 안전난간을 해체(작업 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움)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 지붕상판에서의 작업동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파악하여 작업시작 시 체결한 안전대를 작업종료 시까지 풀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마스트 및 안전난간 등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고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시스템동바리에서 거푸집 고정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사망)

공사명	○○건설(주)	발생일시	'18.07.17.(화), 14:10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전북 전주시	공사규모	지하 2층 지상 25층 15개동
재해개요	'18.07.17.(화), 14:10경 전북 전주시 소재, ○○건설(주)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형틀공인 재해자(남, 만 66세)가 시스템동바리 수평재에서 벽체 유로폼에 플랫폼타이(Flat tie)와 웨지핀(Wedge pin)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상 바닥(H≈2.0m)으로 추락하여 사망		

재해
상황도



안전대책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추락방지조치 철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업무 철저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시 작업자가 높은 위치에서의 이동 등 불안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 순찰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함.

2018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2016. 2. 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써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가. 교육일자 및 장소

교육일자	지역	교육장소	교육일자	지역	교육장소
2018. 11. 13.(화)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회의실	2018. 12. 07.(금)	대구	대구전문건설회관 대구시 동구 화랑로 47, 7층 전문건설회관
2018. 11. 16.(금)	광주	광주전문건설회관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80, 2층 전문건설회관	2018. 12. 11.(화)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회의실
2018. 11. 23.(금)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대전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지하 1층	2018. 12. 14.(금)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4층 중회의실
2018. 11. 29.(목)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회의실	2018. 12. 21.(금)	창원	늘푸른전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2층 강의실

※ 다음 부산지역 교육일정은 2019년 1월 중 예정임.
 ※ 타 지역 및 다른 일정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edu.kosca.or.kr) 확인 후 신청 가능.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비용이 과다 지급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나. 교육내용: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다. 교육대상:

-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면허등록 제외) [의무교육]
 '16. 2. 12.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12호]
-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업자 [임의교육]
 '16. 2. 12. 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법인 대표자 수료 시 15일, 등기부상 임원 수료 시 1인당 5일 감경(최대 3인)
 ※ 감경 받은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 시 감경 불가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시행일: 2016. 2. 11.)]
- 교육 참석대상자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
 개인: 대표자

라. 교육시간: 1일 8시간(9시~18시)

마. 교육비: 15만원(교재·중식 포함)

- 납부방법: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영수증 발급: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 또는 교육 이수 후 전자계산서 발행

2. 신청방법

가.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해 교육일정, 교육안내,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신청

나. 문의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 ☎02-3284-1080, 1076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 김영운 중앙회장은 9월 4일 기획재정부 박성동 국고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반대를 포함한 업계현안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을 국고국장에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직격심사 대상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시 하수급인분 반영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공사계약 이의신청 대상 및 내용 확대 등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박성동 국장은 “오늘 청취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 중앙회 김영운 회장이 전문건설업계의 위상 강화를 위한 대 국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7월 30일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을 시작으로 정성호 기획재정부위원장,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잇달아 면담한 데 이어 8월 22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을 만나 전문건설업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운 회장은 근로시간단축의 단력적인 제도 적용,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건설 산업 업역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 및 SOC 예산의 확대 필요성과 사회보험 확대에 따른 부작용 개선을 건의하는 등 건설현장 애로 사항을 전하고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입법 세일즈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스킨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9월 1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해외건설 수주정보, 정책, 제도, 홍보방안 등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해외건설 보증지원도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해외보증 심사를 위해 해외건설협회가 제공하는 사업성평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해외공사에 대한 보증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시회 2018년 4/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자	주요일정
10.22(월)~10.29(월)	· 2018년 해외선진 건설현장 시찰
11.1(목)	· 2018년도 모니터회의 · 제2차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
11.7(수)	· 2018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11.8(목)	· 2018년 제3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11.9(금)	· 건설공사 전자입찰 실무 강습회
11.15(목)	· 2018년 신규회원 간담회
11.27(화)	· 2018년 제4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12.13(목)	· 2018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12월 중	· 임원연석회의(송년회)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덕재건설
박민영 이사

전 문건설회사에 입사하여 오래도록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이나 궁금했던 점들을 협회에서 보내주시는 코스카레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변경된 건설업 법령이나, 건설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있어서 직원들끼리 돌려가면서 보고,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사들을 위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코스카레터가 되길 바랍니다.



웅진개발(주)
허린 대리

전 문건설에 입사한 지 12년 차이긴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 늘 부산전문건설협회 직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되는 법령이나 새로운 정보 등은 코스카레터를 통해서 수시로 접할 수 있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머, 건강, 문화 등 다양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 일거양득이라고나 할까요. 간과하기 쉽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노무 관련 내용도 수시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스카레터에 다양하고 좋은 정보를 많이 신기 위해 고생하시는 협회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더 발전하는 코스카레터가 되길 기원하며 저 역시 앞으로도 코스카레터 잘 챙겨보겠습니다.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독자퀴즈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주)송덕 **송연주** 대리
- 엘코미(주) **윤예솜** 과장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 52시간

Q 기존에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가 된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월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에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2018. 8. 1. 이후 입찰공고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1개월간 며칠 이상 근로한 경우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하시면(기간: 2018.11.30.(금)까지)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IBK카드인가!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의 복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2014년 3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협회 회원사만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특화카드인 『대한전문건설협회-IBK 제휴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제휴카드의 혜택

01. IBK기업은행의 기본서비스 제공 외 대출금리 및 환율우대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02. 기존 카드보다 많은 포인트 적립(제휴카드 최대 0.5%, 기존카드 0.3%)
03. 세무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 현재 IBK은행과 거래하시는 회원사는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건설인 맞춤형 카드로 변경해 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기업은행이 만나
전문건설 발전을 위해
**더 큰 혜택을
건설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051-633-0260 Fax.051-633-0261

www.kosca21.or.kr